

# 연구실운영비 사용기준

2022.03.01.

**제1조(목적)** 본 내규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운영비의 사용기준에 관하여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(정의)

- “연구실”이란 대학·연구기관 등이 연구 활동을 위하여 시설·장비·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·실습실·실험준비실을 말한다.
- “연구실 운영비”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·설치·임차·사용대차 비용, 사무용품비,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·비품의 구입·유지비용을 말한다.

**제3조(적용범위)** 교외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본 내규를 따른다. 단, 지원기관의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 해당 지침을 준수한다.

- 계상 가능 : 연구수행을 위해 연구실에 비치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집행 가능
- 계상 불가 : 연구실에 비치·이용되지 않거나 연구실 환경 유지와 관련이 없는 것

## 제4조(사용기준)

1. 아래 품목 등 인정항목이라 하더라도 연구실에 비치·이용되지 않는 경우, 개인성 물품 구입은 불인정사항이다.

2. 연구실 운영비 사용기준은 아래 표에 따른다.

구분	품목
사무용 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구입·설치·임차·사용대차에 관한 경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■ 사무용기기 예) PC, 모니터, 프린터 등</li><li>■ 전산소모품 예) USB, 외장하드, 키보드, 마우스 등</li><li>■ 사무용 소프트웨어</li></ul>
사무용품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■ 복사용지, 지류, 잉크, 토너, 필기구, 기타 사무용품</li></ul>
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·비품의 구입·유지 비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■ 냉난방기기, 공기정화기, 가습기 등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※ 단, 중앙집중식 냉난방 및 공조시설의 구입·유지비용은 불인정</li></ul></li><li>■ 청소기, 청소도구 및 보관함, 쓰레기통</li><li>■ 정수기, 생수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설치된 생수기 및 생수 등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※ 생수기에 설치되지 않은 생수, 커피, 다과 등 불인정</li></ul></li><li>■ 사무용 가구(책상, 의자, 캐비닛 등)</li><li>■ 실험용 가구(실험대 등)</li></ul>

구분	품목
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경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연구실의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소모품 구입 비용 예) 휴지, 물티슈 등</li> </ul>

3. 해당물품 구매 시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구매 및 연구물품 관리규정을 따른다.

**제5조(기타사항)** 본 내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준용한다.

#### **부칙(2022.3.1.)**

(시행일) 이 내규는 2022. 3. 1.부터 시행한다.

(경과조치) 이 내규 시행일 이전에 관한 내부운영지침에 의해 시행한 사항들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.